

서울특별시 중구 공고 제 2021-35호

2021년 평생학습 우수 동아리 및 프로그램 지원사업 공모 공고

구민이 주체적으로 학습하는 모임을 발굴·지원하여 평생학습 동아리의 지속성장과 지역에 평생학습 문화를 확산하고자 『2021년 평생학습 우수 동아리 및 프로그램 지원사업』을 다음과 같이 공모 공고합니다.

2021년 5월

서울특별시 중구청장



1. 사업방향

- 가. 중구 지역특색 및 기관의 특성을 살린 창의적 학습 발굴 및 학습소외계층 사회통합
- 나. 스스로 학습하고 배운 것을 지역사회에 나누는 학습 커뮤니티 확산

2. 공모분야

- 가. 우수 동아리 분야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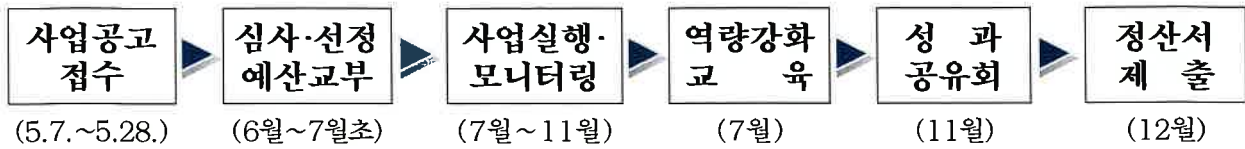
구 분	내 용
지원대상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중구민 최소 5인 이상으로 구성된 학습동아리 · 신청 동아리는 중구청 홈페이지(www.junggu.seoul.kr)에 등록 예정 · 심화학습 활동 및 지역사회 재능나눔활동 수행이 가능한 동아리
운영요건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정기학습: 월2회 이상 학습과 토론 진행 · <u>자부담 10%이상 필수</u>
지원규모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19개 동아리 · 대상별 지원범위: 평가점수에 따른 차등 지원(700천원~1,200천원) · <u>A등급(1개)1,200천원, B등급(3개)1,000천원, C등급(7개)800천원, D등급(8개)700천원</u> · * 응모현황 및 심사결과에 따라 조정 가능
지원항목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강사비, 교재비, 실습(재료)비 등 학습에 필요한 경비 · 지역사회공헌 활동(자원봉사 등)에 필요한 직접경비 · * 보조금은 동아리 회원의 인건비, 식사비, 간식비, 여비, 기념품, 시상금 등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사용요건 상 부적합한 지출 비용은 환수함

구 분	내 용
제외대상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대학(교)소속의 대학생으로 구성되어 있는 동아리 · 영리의 목적 또는 단순한 친목모임 · 직장 내 직원으로 구성되어 있는 동아리 · 강좌수강 외 자생적인 활동을 하지 않는 동아리 · 강사가 일정의 강사료를 받고 리더가 되어 운영하는 동아리 · 특정 정당 및 특정 종교 활동을 위한 동아리 ※ 1개 기관(단체) 당 2개 사업까지 신청 가능

나. 우수 프로그램 분야

구 분	내 용
신청자격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서울시 중구에 주소지를 둔 평생학습기관 및 단체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평생교육법에 의해 등록된 기관 및 단체 -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주문관청의 허가를 얻어 설립한 비영리법인 -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의 규정에 따라 등록된 비영리단체
공모주제 (안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1주제: 동네학(學) 특화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중구 지역특색 및 기관의 특성을 살린 학습 발굴 - 중구의 명소·역사 체험교실, 골목길투어, 동네소식지 제작 등 · 2주제: 심화과정 및 지역공헌 활성화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지역공헌을 위한 전문과정 운영 및 자원봉사자 양성 - 전문강사 양성 및 재능기부 강좌 운영 · 3주제: 학습-일 순환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은퇴예정자 및 경력단절여성 취·창업 교육 · 4주제: 학습 소외계층을 위한 사회통합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비문해·저학력 성인의 교육기회 제공을 통한 생활능력향상 및 사회활동 참여기회 확대
운영요건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최소 학습인원 10명 이상 (중구민50%이상 모집) · 강좌 10회(1회 2시간 내외) 기준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※ 강좌내용에 따라 인원 및 강좌횟수 조정 가능 · 자부담 10%이상 필수
지원규모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5개 프로그램 · 대상별 지원범위: 3,500천원 이내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※ 응모현황 및 심사결과에 따라 조정 가능
지원항목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강사비, 교재비, 실습(재료)비, 홍보비 등 평생학습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직접경비
제외사업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특정기관, 단체의 내부사업 또는 정치적 목적을 위한 사업 등 · 일회성 행사 및 교육, 여행성 사업 · 학자금, 성금, 위로금, 생활비, 상금 등 현금성 지원 사업 ※ 1개 기관(단체) 당 1개 사업만 신청 가능

3. 사업절차



4. 사업기간: 2021. 7월 ~ 11월

5. 사업 공고·신청서 접수

가. 공고기간: 2021. 5. 7.(금) ~ 5. 28.(금)

나. 신청기간: 2021. 5. 24.(월) ~ 5. 28.(금) 【5일간, 근무시간 내】

다. 접수방법: 방문 또는 이메일 접수(mjy797@junggu.seoul.kr)

▶ 방문 접수: 서울시 중구 창경궁로 17, 중구청 본관 1층 평생교육추진단

라. 제출서류

우수동아리 분야	우수프로그램 분야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신청서(동아리 소개, 활동계획 등) 1부 · 동아리 회원명단 1부 ·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동의서 1부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신청서(사업실행계획서, 기관현황 등) 1부 · 기관(단체) 증명서류 1부

※ 신청서 양식은 중구청 홈페이지(www.junggu.seoul.kr)「고시·공고」란에 게시
 마. 문의: 중구 평생교육추진단 ☎02-3396-4592

6. 심사 및 선정

가. 1차 심사: 평생교육 전문가 심사(6월 중)

▶ 심사기준: 추진실적, 활동계획(비대면 활동계획 포함), 사업예산 책정 적절성, 지역사회와의 연계성 등

나. 2차 심사: 중구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(6월말~7월초)

▶ 심의내용: 사업계획서의 타당성 및 지방보조사업자로서의 결격 여부

다. 결과발표: 2021. 7월 초(예정)

※ 중구 보조금 심의위원회 개최일정에 따라 발표시기가 조정될 수 있음

라. 통보방법: 선정대상 개별통보

7. 사업비 교부 및 사업 추진

가. 사업비 교부: 2021. 7월 중(예정)

- ▶ 제출서류: 보조금교부신청서 및 사업실행계획서(심사결과 교부금액에 따른 작성),
보조금 통장 사본, 청렴이행서약서 등

나. 사업 진행시 중간점검 및 모니터링(7~11월) 및 성과공유회(11월) 실시

다. 사업완료 시 사업실적 및 정산보고서 제출

- 제출서류: 결과보고서, 정산보고서, 지출증빙자료 등

8. 기타사항

가. 제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, 제출된 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
지원금을 전액 환수 조치함

나. 공모사업에 참여하는 기관(단체) 및 동아리는 보조금 시스템을 사용하여야 하며,
역량강화교육, 성과공유회에 동아리별 구성원 2명 이상 참여하여야 함

다. 사업기간 종료(2021.11.30.) 후 추진한 사항에 대해 사업비를 집행할 경우 해당
보조금은 환수 조치함

라. 사업 선정 후 사업실행계획서 등 제출서류가 부실하거나, 사업을 부진하게
운영할 경우 선정 취소될 수 있음

마. 심사와 관련된 평가내용 등의 자료는 비공개로 함

바. 사업추진 일정은 다소 변경될 수 있음

예산편성 기준 및 작성방법

항 목	기 준	지출한도액	비 고
강사비	◦ 서울특별시 인재개발원 「강사수당 및 원고료 등 지급기준」 참고 (별첨) ※ 월 지급 금액이 125,000원을 초과할 경우 원천징수를 통하여 공제된 세액에 대해 관련서류를 작성하여 세무서에 납부 필수		
재료비	◦ 학습 및 지역 참여 활동에 필요한 각종 물품 구입		
교재비	◦ 학습 및 지역 참여 활동에 사용되는 교재 구입비		
홍보비	◦ 현수막, 포스터, 리플릿 등(명함은 불가)		
기타운영비	◦ 행사개최를 위한 장소 대관 및 기자재 임차비용	보조금 총액의 10% 이내	
	◦ 학습 및 지역 참여 활동을 위한 문구류 등 사무용품 구입비		
1) 지원대상항목 : 강사비, 재료비, 교재비, 홍보비, 기타운영비만 지원함 2) 자산취득경비는 지원 불가(소모성 재료비만 지원 가능) 3) 임차료: 행사를 위해 필요한 장소 대관 및 임차비용(임시) 예: 스티디카페 등 4) 강사료 지급기준 작성방법 - 강사료 : 단가(시간)×횟수=총액 (산출예시 : 100,000원(2시간)×1회=100,000원) 5) 항목간 예산전용을 원칙적으로 불허하며, 변동사항 발생시 반드시 집행전에 담당자와 협의 □ 지원 제외 항목 • 동아리 회원의 인건비, 여비(현금지급) 등의 간접비 • 기념품, 시상품, 단체복(조끼, 유니폼) • 사무실 임대료, 공과금, 전화요금, 이체 수수료 등 사업수행과 직접관련이 없는 단체의 일반 운영비 • 개인교재비 : 개인교재 및 재료(동아리 행사용 재료비는 지출가능) • 내부행사비 : 정기회의, 임원회의 친목모임, 단합대회, 총회 등에 소요되는 경비 • 자산취득 경비 : 사무기기, 동아리 물품 또는 악기 구입비, 장비구입 • 강사료 지급 대상이 동아리 내 운영자 및 회원일 경우 • 강사료 외 강사에게 지급되는 교통비, 사례비, 접대비 등 • 시설비, 수선비, 시설부대비, 전신전화 설비 등 자본적 경비 • 차량유지비, 유류비, 주차비			

【붙임1】 「강사수당 및 원고료 등 지급기준」

붙임1

강사수당 및 원고료 등 지급기준(20.10. 1.부)

1 강사수당 지급기준

1. 일반교육 강사 지급기준

(단위: 천원)

등 급	대 상		지 급 액		비 고
	공공분야	민간분야	기본 1시간	초과 시간	
특 강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전·현직 차관(급) 이상 • 전·현직 기초자치단체장 이상 및 이에 준하는 자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대학교 총장(급) 및 이에 준하는 학계인사로 원장이 인정하는 자 • 사회적 명망과 인지도가 높은 문화·예술·종교인·기업대표(급) 및 이에 준하는 자로 원장이 인정하는 자 	400	200	민간분야 초과 매시간 지급
전 문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전·현직 공무원 및 이에 준하는 자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법률·경제·사회·문화·보건 등 해당 분야 5년 이상 활동경력자 및 이에 준하는 자로 원장이 인정하는 자 	240	120	
보조강사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각종 교육운영(실기실습 등) 보조자 		40	40	

- 주) 1. 위 지급대상에 명시적으로 규정되지 않은 공공분야 종사자는 「청탁금지법 시행령」 [별표2] 제2호의 적용 기준에 따라 구분
2. 위 기준에도 불구하고 교육과정운영 및 강사초빙의 특이한 사정 등을 감안 「청탁금지법」 과 「같은 법 시행령」 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원장이 인정하는 자에 한하여 별도방침에 따른 기준으로 지급 가능하며, 이 경우 조정한 그 사례에만 적용